

	보도 자료	
6.19(금) 석간부터 보도 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, 금융감독원 IT·금융정보보호단			
책임자	김동환 과장 (2156-9490)	담당자	김경수 사무관 (2156-9493)	
	김유미 선임국장 (3145-7180)		조성인 팀장 (3145-7415)	
배포일	2015. 6. 18.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

**제 목 : 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
[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]**

<p>1. 추진경과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위·금감원은 민간부문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라는 금융 개혁 방향에 맞춰, IT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중</p> <p>○ 이에 따라, 금융회사 스스로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 시대에 부응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보안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」은 금융협회, 핀테크업체, 금융보안원,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,</p> <p>○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(15.6.10)의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회의 (15.6.18)에 보고되었음</p>

2. 주요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

(1) 자체 점검 및 책임 강화

① 금융회사 자율점검 강화

- IT감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위해 IT 내부감사 가이드라인 및 IT 내부감사요원 교육프로그램 마련(4분기, 금융협회·금보원)
- 기 시행중인 'IT부문 금융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*'의 대상 금융회사 및 점검항목을 확대하여 내실화 도모(3분기, 금감원)
 - * 금융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IT보안관련 미흡사항을 발굴·개선하고 금감원은 이행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('15년 현재 38개 금융회사 대상으로 실시 중)
- 정보보안 및 외부주문 관련 보안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나치게 세세한 점검항목을 필수항목 위주로 개편(4분기, 금감원)

②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수준 합리화

- 전자금융사고 빈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액토록 권고(3분기, 금감원)
 -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거래 규모, 사고발생 추이, 보안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보험가입 금액* 산정
 - * 예시: 법규상 기준금액과 적정 보험가입 금액 산정 결과 중 큰 값으로 산정
 - 동 산정 내용은 금융회사가 매년 제출하는 'IT부문 계획서'에 기재하여 금감원이 사후 점검하고 현장검사시 보험가입 이행실태 확인

③ FDS* 정보공유체계 구축

* Fraud Detection System :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,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

-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를 위한 **공동 기준을 마련**하고 금융 정보공유·분석센터(ISAC)를 운영하는 **금보원에 「FDS 정보 공유시스템」을 구축**(4분기, 금보원)
- 기존 FDS의 고도화가 필요한 **카드사 및 PG사** 등으로 FDS **협의체를 확대하여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**(3분기, 금감원)

기대효과

- ▶ 금융회사 스스로 IT보안 위규사항 발굴·보완하는 내부감사 일상화로 **자체 보안수준 향상**
- ▶ 전자금융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**능동적인 책임이행 도모**
- ▶ **쏠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상금융거래 대응수준 대폭 향상**

(2) IT보안 역량 향상

①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·활성화

- **금융IT 협의체**를 금융위·금감원-금융회사, 금융회사간, 권역간, 직급별(관리자, 실무자) 등으로 **다각화·정례화**(3분기, 금융위·금감원·금보원)
 - 금융보안 우수·사고사례 전파, 금융ISAC(금보원)의 침해 위협 및 사고 분석결과 공유,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창구로 활용

②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(지침) 신속 정비

- 신규 보안기술·인증수단 등의 도입,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 지침 등과 관련한 **가이드라인**을 민간자율로 **적기 제정 유도** (연중, 금융협회·금보원)

- 아울러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기존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**과거 가이드라인 정비**(연중, 금융협회·금보원)

기대효과

- ▶ IT보안 정보공유 및 협업의 활성화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수준 및 침해대응 능력 향상
- ▶ 민간 주도의 가이드 마련을 통해 자율규제 풍토 조성 및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

(3) 민간 자율의 보안성 검토 체계 구축

1 금융회사 자체 보안성 검토 지원체계 구축

-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**보안성 심의 주요 사례를 분석·제공**(6월말, 금감원)
- 금융회사가 **객관적인 전문가 진단 필요시** 금융보안 전문기관에 **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**(6월말, 금보원)

2 핀테크 기술의 보안수준 진단 체계 구축

- **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** 금융보안 전문기관에게 **보안수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및 운영환경 마련**(3분기, 금보원)
- **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 의뢰 및 보안 진단 후 금융회사 제휴 알선 등을 지원**(3분기, 금융위·금감원·금보원)

기대효과

- ▶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보안수준 진단을 통해 **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** 및 **정보보안을 전제로 한 금융회사-핀테크 업체간 협업 활성화 도모**

(4) 감시체계 강화

□ 금융보안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

- 금융회사가 금융IT 및 정보보안에 대한 **연간계획을 면밀히 수립**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·제출할 수 있도록
 - IT부문 계획서, 취약점 분석·평가보고서 등의 **표준양식 제정** 및 이에 대한 **점검 강화**(3분기, 금감원)
- 금융회사의 **신규 전자금융서비스** 관련 자체 보안성검토 결과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 등 **필요시 개선 권고**(연중, 금감원)

기대효과

- ▶ 금융회사의 IT보안체계 확립을 독려하고 다양한 상시감시 수단을 통한 **사후 점검 및 검사 강화 기반 구축**

※ 붙임 :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<http://www.fss.or.kr>

